	<h2 style="margin: 0;">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h2>	문서번호	3-1-1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1. 01. 19.		
		페이지	1/4	관리 부서	사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제32조에 따라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에서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평의위원회의 의원의 정수는 11인으로 하고 의원의 단위별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4명
2. 직원 : 1명
3. 조교 : 1명
4. 학생대표 : 2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문 등 외부인사 : 3명


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의원의 수가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선임 기준 : 교직원의 경우 직위 해제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 및 외부인사(동문 포함) 일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자로 한다.

④ 자격요건 : 교원과 직원은 교원과 직원 재직자 및 외부인사(동문 포함)은 대학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자로 한다.

⑤ 관계되는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자기와 증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위원이 되기전에 감사·수사·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			문서번호	3-1-1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1. 01. 19.	
				페이지	2/4	관리 부서

⑥ 위원회의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평의원 위촉)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을 고려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단 총장이 추천을 요청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구 성단위에 대해서는 교무회의에서 추천 요청한다.

1. 교원 : 교수회의에서 추천한다.
2. 직원 : 직원회의에서 추천한다.
3. 조교 : 조교회의에서 추천한다.
3. 학생 : 총학생회에서 추천한다.
4. 동문 : 동문회에서 추천한다.
5. 외부인사 : 공개모집 또는 교무회의에서 추천한다.

제5조(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6조(평의원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이며 임기종료일은 학년 종료일로 한다.

제7조(자격의 상실) 평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연수, 안식년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학생평의원은 임기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3. 외부평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			문서번호	3-1-1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1. 01. 19.	
				페이지	3/4	관리 부서

제8조(회의) ①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장,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재적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의장은 평의위원회 회의개최 7일전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평의원에게 통지 및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 평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평의위원회의 의사는 의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출석 및 자료 요청)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교직원에게 평의위원회에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당 교직원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및 비밀유지) ① 평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 및 평의위원회 회의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② 평의위원회 의원은 직무상 습득한 학교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평의위원회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평의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 총무팀 직원을 간사로 한다.

② 간사는 평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평의원의 서명을 받은 후 총장 및 평의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등록금심위위원회에는 관련된 회의록을 통지한다.

제13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준용 및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관계법령, 법인 정관을 준용하되, 이외 운영에 관한 필요나 규정 개정이 필요할 시 평의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h2>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h2>	문서번호	3-1-1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1. 01. 19.		
		페이지	4/4	관리 부서	사무처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구성) 의원의 구성 정수와 제6조(평의원 임기)는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평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평의원은 제3조(구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평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